

『인천광역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』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3년 11월 22일

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

인천광역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
1. 제안이유

-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태극기의 게양 및 선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로 하여금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임.

2. 주요내용

가. 시 관할구역의 국기 게양일을 규정(안 제3조)

-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 기간
-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국권을 침탈당한 국치일(매년 8월 29일, 조 기 게양)
- 인천광역시민의 날(매년 10월 15일)
- 그 밖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

- 나. 국기 선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보호대상자, 장애인,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태극기 지급 근거 규정(안 제5조)
- 다. 국기 선양을 위해 교육·홍보·캠페인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(안 제6조)
- 라. 국기 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·마을 또는 기관·단체에 포상 근거 규정(안 제7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02일(월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(참조 : 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, 전화032-440-6213, 팩스 032-440-8763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주소·성명(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) 및 전화번호

제출자	해당 조항	찬반여부 및 사유	비고
○주 소 : ○성 명 : ○연락처 :			

※ 다른 서식 사용 가능

4. 참고자료

- 인천광역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 1부.

인천광역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대한민국국기법」에 따라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, 태극기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정신을 고취하여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게양일의 지정과 국기 선양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대한민국의 국기”(이하 “국기”라 한다)란 「대한민국국기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.
2. “국기 선양”이란 국기에 대한 인식 또는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하는 것 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.

제3조(국기의 게양일) 법이 정한 국기게양일 이외에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인천광역시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
2.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국권을 침탈당한 국치일(매년 8월 29일, 조기 게양)
3. 인천광역시민의 날(매년 10월 15일)
4. 그 밖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

제4조(국기의 선양)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기 위하여 국기사랑 캠페인 등 다양한 국기 선양 사

업을 개발·추진하여야 한다.

제5조(국기 보급사업) ① 시장은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태극기를 무료로 보급할 수 있다.
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의 수급권자
 2. 「장애인복지법」의 장애인
 3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국가유공자
 4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의 고엽제 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
 5. 그 밖에 시장이 태극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
- ② 국기 보급사업 시행에 따른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제6조(국기 선양 단체의 지원) 시장은 국기 선양을 위해 교육·홍보·캠페인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

제7조(포상) 시장은 국기 계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·마을 또는 기관·단체에 대하여 「인천광역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련법령 검토 및 발체사항

관련법령	☐ 대한민국국기법 및 동법 시행령 ☐ 국기의 게양·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 당 없 음”
관련자료	“해 당 없 음”

관련법령 발췌사항

□ 대한민국국기법

제5조 (국기의 존엄성 등) ① 모든 국민은 국기를 존중하고 애호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기의 제작·게양 및 관리 등에 있어서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제8조(국기의 게양일 등) ①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은 다음 각호와 같다. <개정 2011.5.30>

1. 「국경일에 관한 법률」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경일
2. 「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」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 및 국군의 날
3. 「국가장법」 제6조에 따른 국가장기간
4.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
5.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

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기는 매일·24시간 게양할 수 있다.

③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등에는 국기를 연중 게양하여야 하며,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가능한 한 연중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하여야 한다.

1. 공항·호텔 등 국제적인 교류장소

2. 대형건물·공원·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

3. 주요 정부청사의 울타리

4. 많은 깃대가 함께 설치된 장소

5.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

④각급 학교 및 군부대의 주된 계양대에는 국기를 매일 낮에만 게양한다.

⑤국기가 심한 눈·비와 바람 등으로 그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를 게양하지 아니한다.

⑥국기의 게양 및 강하 시각, 시각의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

제2조 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기선양활동) ①안전행정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은 국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국기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 활동 등 국기선양사업을 추진·지원한다.

(개정 2008.2.29)

□ 국기의 게양·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(국무총리 훈령 제538호)

제2조(정의)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2. “가로기”란 가로(街路)변에 다는 국기를 말한다.

제9조(가로기 게양) ① 가로기는 다음 각 호의 날을 경축하기 위해 주요 도로
변에 게양하며, 제1호의 경우에는 전일부터 당일까지, 그 밖의 경우에는 해
당일 또는 해당기간에 게양한다.

1. 「국경일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국경일
2. 국군의 날
3. 그 밖에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 또는 기간

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기념일이나 축제
를 경축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한정하여 가로기를
게양할 수 있으며, 국기 선양을 목적으로 일정구간을 지정하여 연중 게양할
수 있다.

제15조(국기 보급 확대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기의 원활한 보급을 위하
여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, 관계행정기관
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주민들이 국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국
기선양관련단체, 국기판매업체 등과 협의하여 소속기관의 민원실에 국기
판매대를 설치·운영하거나 구내매점에서 국기를 판매하도록 하고, 백화
점·편의점·문구점 등 상업시설에서도 국기를 판매할 것을 적극 권장하
도록 한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대회·시상품이나 행사기념품 및 방문
기념품 등으로 국기를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입자 또는 혼인 신고자 등에게 국기를 선물

로 증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, 공동주택이나 각종 업소에서도 입주 증정품 또는 사은품 등으로 국기를 활용할 것을 적극 권장 하도록 한다.

제16조(국기수거함의 설치·운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원실, 주민센터 등에 국기수거함을 설치·운영하여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오염·훼손된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한다.

② 국기수거함은 국기의 품격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제작·관리하여야 한다.

제19조(국기의 선양)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기의 존엄성과 위상을 높이고 국민들의 국기에 대한 인식 및 친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기 보급 운동, 국기사랑 글짓기대회, 그림 그리기 대회, 사진대전 등 다양한 국기 선양 사업을 개발·추진하도록 한다.

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국기 선양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요인

- 국기 선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보호대상자, 장애인, 국가 유공자 등에 대하여 태극기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제5조(국기 보급 사업)과 국기 선양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제6조(국기 선양 단체의 지원)에 의하여 비용 발생함.

2. 미첨부 근거규정

- 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의하여 비용추계서 미첨부

4. 작 성 자

- 기획행정위원회 이 용 범 의원